

「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1. 27(수) 평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장)

나. 회부일자 : 2013. 12. 4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3. 12. 4(수) 제19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상하수도 사업소장 천장호)

가. 제안이유

- 2007년 이후 소비자물가 안정을 이유로 하수도사용료를 동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,
- 2012.08.17. 제정한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원인자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1항 6호나목)
 -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를 반영하여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

규정 신설

○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(별표 1)

-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간별 요금으로 개정

* 하수도사용료 인상(20.66%) 가정용 220원=>252원(32원)

⇒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[2013.10.10.(목)]

○ 관련법 조항 수정, 기타 용어의 통일,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

- 관련법령의 인용법규 조항 등을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고,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최초부과 이후 6년간 현행요금 체계 운영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2012년도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결과 톤당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2,214원인 반면 요금부과 단가가 281원으로 현실화율은 12.7%이며 요금인상 요인은 686%로 파악되었습니다.
- 요금현실화율이 12,7%임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동결한 사항을 비교할 때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.
- 기타 원인자 부담금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《생 략》

5. 토론요지

《없 음》

6. 심사결과

《원안의결》

7. 소수의견 요지

《없 음》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건의사항 : 없 음
- 기타 특별한 사항 : 없 음

【붙임】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

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하수도법”을 “「하수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하수도법”을 “「하수도법」”으로, “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”를 “제15조”로, “하는”을 “할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례시행규칙이”를 “조례시행규칙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따른”을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영제22조”를 “법 제2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규칙이”를 “조례시행규칙으로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)”을 “(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24조의 규정”을 “법 제24조”로, “공작물”을 “인공구조물”로, “규칙이”를 “조례시행규칙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공작물”을 “인공구조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인정한 때”를 “인정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제2항에 따른”을 “제2항의”로,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제1항제2호”를 “제2

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배수 설비 준공검사 신청서”를 “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 신청서”를 “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”로, “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설치되었는지 여부를”을 “설치되었는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”를 “검사하게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”를 “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추정한다”를 “추가 징수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고장으로 인하여”를 “고장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제2호나목 중 “해수”를 “해수,”로, “제3조제1항 제2호”를 “제3조제1항 제2호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인정이”를 “산정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망실하였”을 “잃어버렸”으로, “발생시”를 “발생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공작물설치”를 “인공구조물 설치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법 제24조의 규정”을 “법 제2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시”를 “시작”으로, “산정”을 “계산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6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제2호 단서 중 “당해 신설되”를 “신설되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1조 제1항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으로, 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4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시군내”를 “시군 내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”를 “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”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발부하여야”를 “발급하여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(제10조제2항)

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
- 하수도 사용업종은 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」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.
-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
-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구분 업종	사 용 요 율	
	사용구분 (m ³ /월)	m ³ 당 단가 (원)
가 정 용	1 ~ 10	212
	11 ~ 20	229
	21 ~ 30	252
	31 ~ 40	279
	41 ~ 50	308
	51이상	335
업 무 용	1 ~ 20	347
	21 ~ 50	383
	51 ~ 100	420
	101 ~ 300	461
	301이상	471
영 업 용	1 ~ 30	555
	31 ~ 50	611
	51 ~ 100	675
	101이상	747
육 탕 용	1 ~ 200	367
	201 ~ 300	350
	301 ~ 500	377
	501이상	414
전용공업용		705

주) 1.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.

